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6 경상남도 새마을회관 12층 (명서동206-5번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51388

반 송
불 요

102198087_0000012_001_010

우 체 국
e그린우편

[접수국 : 인터넷]
2021년 02월 19일 제작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 귀중
50132

"변화, 혁신, 회원중심 도회운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수신자 하단 수신자 참조

(참조)

제 목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는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대상단지에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이번 상반기 교육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오며, 교육주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용**」으로,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끝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설물 안전관리 주관 부서장님 및 담당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100세대이상 150세대미만) 또한 **시설물 관리를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교육의 대상으로 하였는바,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공문 등 (의무관리단지) 1부.

2.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공문 등 (비의무관리단지) 1부. 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수신자 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거제시장(건축과장),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고성군수(도시디자인과장),김해시장(공동주택관리과장),남해군수(도시건축과),밀양시장(건축과장),사천시장(건축과장),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양산시장(공동주택과장),의령군수(건설도시과장),진주시장(건축과장),창녕군수(주택산림과장),창원시장(주택정책과장),통영시장(건축디자인과장),하동군수(도시건축과장),함안군수(도시과장),함양군수(민원과장),합천군수(도시건축과장)

담당 사무국장 (전결 2021.02.18) 길진영

협조자

시행 대주관경남 21-009 (2021.02.18.) 접수

우 5138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6(명서동 206-5) 경상남도 새마을회관 12층 / www.gnam.co.kr

전화 055-274-0138 팩스 055-274-0139 / khmaorg@hanmail.net / 공개.

붙임1.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공문 등 (의무관리단지)

"변화, 혁신, 회원중심 도회운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수신자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귀하

(참조) 관리사무소장

제 목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관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3.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교육과정을 시행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안내문에 기재된 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교육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4. 이번 상반기 교육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붙임 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이수 바랍니다.

5. 아울러, 이번 상반기 교육주제는「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필히 이수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참고 :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이 포함되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부. 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수신자

담당 사무국장 (전결 2021.02.18) 길진영

협조자

시행 대주관경남 21-007 (2021.02.18.) 접수

우 5138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6(명서동 206-5) 경상남도 새마을회관 12층 / www.gnam.co.kr

전화 055-274-0138 팩스 055-274-0139 / khmaorg@hanmail.net / 공개

【붙임】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21년 상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예시) 안전관리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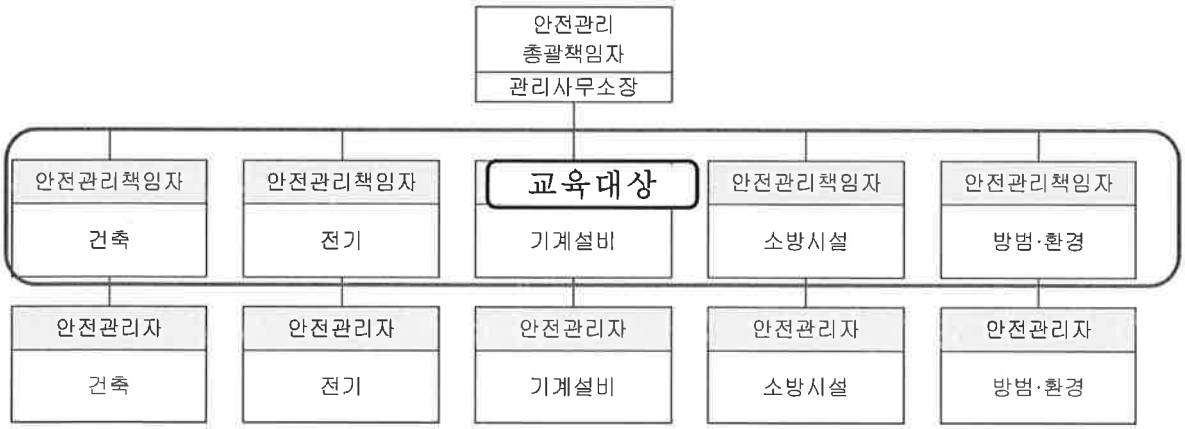

※ 교육대상자, 관리직원 중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점검/보수/검사/교육)를 담당하는 자

※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민원 발생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하고 있음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17개 시·도지사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해당교육기간 00시~24시까지)
- 교 육 비 : 23,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2월 22일 (월) ~ 3월 5일 (금)
- 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기수	교육기간	비고
경남	1기	3월17일(수)~3월28일(일) 24시간	온라인 동영상교육

7. 교육시간표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용】** 1. 안전의 의미와 안전관리의 목적 1.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업무 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4.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방법(관리실무) 5. 개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안전관리 업무 6. 시설물안전전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2차시	30'		
	3차시	30'		
	4차시	30'		
	5차시	30'		
	6차시	30'		
2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 1. 층간소음의 개요 및 발생 현황 2. 층간소음 피해 및 해소 방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2차시	30'		

8. 학습방법

- **학습방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 에 접속하여 사이버연수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학습 방법은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매뉴얼' 참조 [3/5(금) 이후 다운로드 가능(예정)]**
- **본 교육은 교재가 별도로 배부되지 않습니다. 교안(PPT)를 교육수강시스템 자료실에 공유해드리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강기간 전 주, 교육신청자 대상으로 SMS문자를 통해 학습방법 안내 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온라인교육 교육이수증의 경우 4/19일(월)부터 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연락처로 문의
  - 온라인 시스템 구동 및 오류 : 1544-9001((주)멀티캠퍼스 학습지원센터)
  - 행정처리 및 기타 사항 : 055-274-0138(경남도회)

♣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이수 부탁드립니다.

붙임2.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공문 등 (비의무관리단지)

"변화, 혁신, 회원중심 도회운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수신자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귀하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장, 통·반장 등
제 목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님, 통·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시설물관리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번 상반기 교육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오며,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일정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담당자께서는【붙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규모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본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 아울러, 이번 상반기 교육주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용**」으로 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장님 및 통·반장님께서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참고 :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이 포함되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부. 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수신자

담당 사무국장 (전결 2021.02.18) 길진영

협조자

시행 대주관경남 21-008 (2021.02.18.) 접수

우 5138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6(명서동 206-5) 경상남도 새마을회관 12층 / www.gnam.co.kr

전화 055-274-0138 팩스 055-274-0139 / khmaorg@hanmail.net / 공개

【붙임】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2021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21년 상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예시) 안전관리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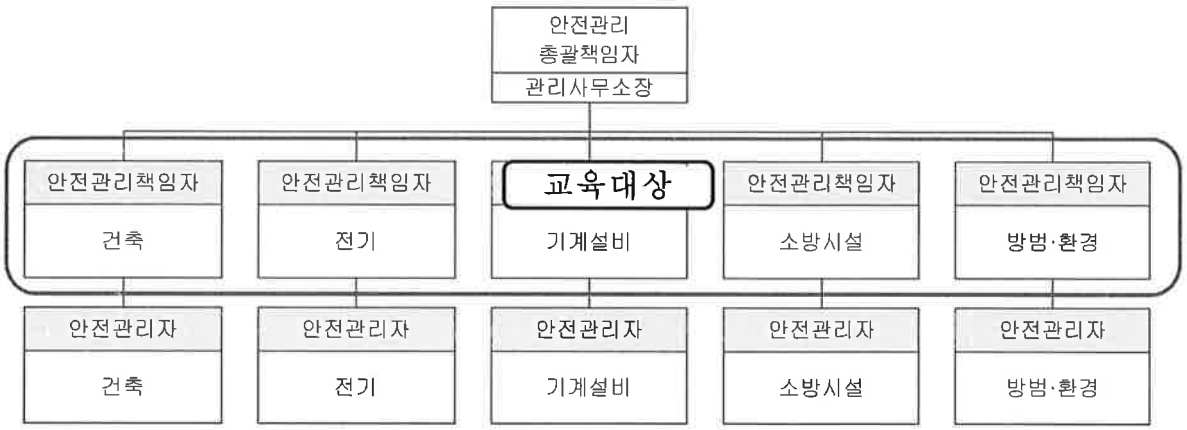

※ 교육대상자, 관리직원 중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점검/보수/검사/교육)를 담당하는 자
※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민원 발생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하고 있음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17개 시·도지사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해당교육기간 00시~24시까지)
- 교 육 비 : 23,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2월 22일 (월) ~ 3월 5일 (금)
- 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클릭

⇒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기수	교육기간	비고
경남	1기	3월17일(수)~3월28일(일) 24시간	온라인 동영상교육

7. 교육시간표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2차시	30'	1. 안전의 의미와 안전관리의 목적	
	3차시	30'	1.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업무	
	4차시	30'	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5차시	30'	4.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방법(관리실무)	
	6차시	30'	5. 개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안전관리 업무	
			6. 시설물안전전검	
2과목	1차시	30'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2차시	30'	1. 층간소음의 개요 및 발생 현황	
			2. 층간소음 피해 및 해소 방안	

8. 학습방법

- **학습방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 에 접속하여 사이버연수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학습 방법은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매뉴얼' 참조 [3/5(금) 이후 다운로드 가능(예정)]**
- **본 교육은 교재가 별도로 배부되지 않습니다. 교안(PPT)를 교육수강시스템 자료실에 공유해드리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강기간 전 주, 교육신청자 대상으로 SMS문자를 통해 학습방법 안내 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온라인교육 교육이수증의 경우 4/19일(월)부터 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연락처로 문의
  - 온라인 시스템 구동 및 오류 : 1544-9001((주)멀티캠퍼스 학습지원센터)
  - 행정처리 및 기타 사항 : 055-274-0138(경남도회)

♣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이수 부탁드립니다.